

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3. 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3년 3월 7일
전문위원 권오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37
- 나. 발의자: 신찬호 의원 외 7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2월 24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7일

2. 제안이유

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,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·시행 근거 마련 (안 제4조)
- 다.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(안 제5조)

라.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규정 (안 제6조)

마.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4조, 제9조, 제22조

2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, 제45조, 제46조, 제49조, 제50조

3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해당부서: 장애인복지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2. 27. ~ 3. 6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○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¹⁾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정대리인과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호자²⁾를 말한다.
3. “지능정보화”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³⁾를 말한다.
4. “정보격차”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.

-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·복지·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
-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[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]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추진사업의 내용과 사무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-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 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 - 2) 제20조(보호자 범위)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”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 - 3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(정의)
5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 ·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·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· 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.
13. “정보격차”란 사회적 · 경제적 ·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, 그 와 관련된 기기 ·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.

제6조(추진사업)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
2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3.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
4.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적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⁴⁾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「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」 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표를 살펴보면,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함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무선 통신기기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종합수치는 매년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나
-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⁵⁾은 전년 대비 2.6% 상승한 82.9%로,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93.0% 보다 무려 10.1% 낮은 수준임

4)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정보취약계층"이란 장애인 · 고령자 등 신체적 · 사회적 ·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.

5)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「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」
- 조사대상: 2021년 8월 1일 기준 만 7~69세 등록장애인 2,200명

- 이를 단순히 인터넷 이용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,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점자가 없고 눈높이도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사례는 즐비함
- 게다가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등록장애인 수[28,513명, 2023. 1. 31. 기준]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서 전체 인구의 5.0%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, 사회적·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- 아울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앞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

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지능정보화”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
13. “정보격차”란 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, 그와 관련된 기기·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.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6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

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사업자

2. 장애인·고령자·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

3.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

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3. 그 밖에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
른 북한이탈주민

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20조(보호자 범위)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”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